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2년 9월 16일 의 회 운 영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년 9월 6일, 고영찬, 윤영희 의원

나. 회부일자 : 2022년 9월 6일 회부

다. 상정일자 : 제2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

제1차 의회운영위원회(2022년 9월 16일)

○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고영찬 의원)

가. 개정이유

 의원들이 소속 상임위원회를 초월하여 관심분야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연구단체를 구성하고, 등록된 연구단체에 예산 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의원의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을 활성화하고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의원연구단체의 구성(안 제3조)
- 의원연구단체의 등록(안 제4조)
- 의원연구단체의 심의(안 제5조, 안 제6조)
- 의원연구단체의 지원(안 제8조)
-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취소(안 제10조)
- 의원연구단체의 결과보고서 제출(안 제13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김하영

나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의원들의 정책개발 및 입법 활동을 활성화하고, 정책 개발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 활동의 지원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의원들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임.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 의원연구단체의 구성, 등록, 연구활동계획서의 제출,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, 의원연구단체 지원, 연구활동 보고서의 제출 등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, 효율적으로 정비된 조례안으로 보여짂.
- O 의원연구단체의 구성(안 제3조)
 - 하나의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, 의원 1명이 가입할 수 있는 연구단체의 수는 2개 이하로 제한하였으며, 연구 단체의 원활한 추진 및 우리구의회와 서울시 타 자치구의회 의원 수 등을 고려하여 3명 이상의 구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.
-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등록취소 방법 규정(안 제4조, 안 제10조)
 -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단체 등록신청서와 함께 연구활동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의장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등록여부를 통보하여야 함.
 - 또한, 안 제10조는 연구단체의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연구 활동계획서에 따른 충실한 연구 및 결과 보고서 미제출을 방지하고 연구단체 활동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연구단체 심의를 위한 위원회 운영(안 제5조~안 제7조)
 -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설치, 운영, 기능사항을 규정하였

으며, 연구단체와 관련된 각종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.

- 연구단체 예산지원 근거 마련(안 제8조)
 - 의장은 의정운영공통경비의 20% 범위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, 한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1년에 1,000만원이내로 제한함.
- 연구단체의 활동 기간(안 제11조)
 - 연구활동 및 연구용역 기간은 연구단체 등록일로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로,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에는 5월 31일까지로 규정하여 당해연도에 연구가 종료될 수 있도록 함.
- 연구활동 결과보고 및 관리(안 제13조, 안 제14조)
 -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연구활동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, 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심사하도록 규정하였음.
 - 연구 결과보고서는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,
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원연구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도록
 함으로써 연구활동의 충실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.
- 본 조례안은 의원의 정책개발과 입법 활동을 촉진하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저촉 되지 않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4. **질의 및 답변요지** : 생 략
- **5. 토론요지** : 생 략
-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**기타 필요한 사항** : 없 음